

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운용 계획

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(전승지원 계획 수립)에 따라,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운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전수교육지원금 (월정액)

- 지급대상 : 전수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보유자, 전승교육사, 보유단체
 - 지급기준
 - 보유자 : 월 1,500,000원
 - 전승교육사 : 월 750,000원
 - 보유단체
 - 보유단체 : 월 3,600,000원
 -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: 월 5,500,000원
- * '보유자 없는 보유단체'는 전승활성화를 위해 보유자가 있는 경우보다 월정 전수교육지원금을 추가 지원
- * 법인 미전환 단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 (보유단체 월3,600,000원→ 월2,900,000원,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월5,500,000원→ 월4,500,000원)

2. 전수장학금 (월정액)

- 지급대상 : 취약종목 보유자에게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전수장학생
 - ※ 취약종목 보유자 1인당 3명 이내 선발, 선발 후 최대 5년 지원
- 지급기준 : 월 275,000원

3. 전승활동 장려금 (연 1회)

- 지급대상 : 연간 전승활동 실적 등이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종목의 보유자·전승교육사와 보유단체

○ 지급기준 : 종목 특성 및 전승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

구분	분야	평가 사항
개인 종목	예능, 놀이, 무예	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등 * 일반종목과 취약종목을 구별하여 별도 범주 내에서 평가
	기술, 생활관습	
단체 종목	예능	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③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
	놀이, 무예, 의식, 기술, 생활관습	

* 코로나 상황 및 운용 여건상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.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

○ 지급시기 : '22. 12월(예정)

- 전승활동 실적점검 기간 : '22. 1월 ~ '22. 10월

4. 취약종목 추가 지원금 (연 1회)

○ 지급대상 : 전승취약종목('20.4월 35종목 선정)의 보유자, 전승교육사

* 취약종목에 보유자·전승교육사가 없을 경우, 이수자에게 지원

- 예능(5종목) : 서도소리, 가곡, 가사, 줄타기, 발탈
 - 기술(30종목) : 갓일, 한산모시짜기, 매듭장, 나주의셋골나이, 낙죽장, 조각장, 악기장(북제작, 편종·편경제작), 궁시장, 채상장, 장도장, 두석장, 백동연죽장, 망건장, 탕건장, 입사장, 자수장, 바디장, 침선장, 전통장, 옹기장, 소반장, 금속활자장, 완초장, 누비장, 화각장, 윤도장, 염장, 금박장, 선자장, 낙화장
- * 전승취약종목은 3년마다 재선정

○ 지원성격 : 전승활동 증진을 위한 추가지원금

○ 지급방안 : 해당 보유자, 전승교육사가 추가 지원금을 신청(9~10월)하여 전승활동* 실적과 증빙자료가 증명될 경우에 상한 금액까지 연 1회 연말 지급

* 전승활동 : 전승활동 재료구입 비용, 전시회·공연 개최비용 및 임차료 등

○ 지급기준

구분	보유자	전승교육사	이수자
지원 상한금액	4,716,000원	3,132,000원	3,132,000원

5. 특별지원금

○ 지급대상 및 기준

-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(월정액) : 월 1,000,000원
- 장례위로금 : 명예보유자·보유자(1,200,000원), 전승교육사(600,000원)
- 입원위로금 : 보유자(500,000원), 전승교육사(300,000원) / 10일 이상 입원 시, 연 1회

6.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

○ 법적근거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2항
- 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8조(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)

○ 제한대상 :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전수장학생 등

○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내용

☞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

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1. 3.>

1.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
2. 삭제 <2020. 11. 3.>
3.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
☞ 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8조(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)

①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전수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.

1.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

② 원장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